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외장		
람			제1691호 2022. 8. 29.(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1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30호 인천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36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1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38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변경):계명어린이공원】결정 입안을 위한 열람 공고 ————— 2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39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과기어린이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안) ————— 2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40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연희3지구 제1호공원(갈매어린이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안) ————— 2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44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신청 공고 ————— 29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11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8.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설원로138번안길 48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8.29.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2-8-29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452-2, 452-15	인천광역시 서구 설원로138번안길 48 (대곡동)	20130730	설원로138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4로 94 (원당동)	20200420	'서로플 이음'에서 착안, 신도시의 동서를 잇는 네번째 도로	검단신도시 AB16블럭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2-8-29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원전로37번길 12-13 (경서동)	건물 말소로 인한 폐지	20090922	원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530호

인천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8.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도모하고자 함.
- 위원회 위원장을 정비하여 신속한 업무추진 및 위원회 운영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역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는 것으로 개정
- 지역협의회 위원장을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516, 팩스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위원회 위원장을 정비하여 신속한 업무추진 및 위원회 운영 도모하고자 함.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는 것으로 개정
(안 제6조제1항)
- 지역협의회 위원장을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6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p> <p>② <u>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u></p> <p>③ (생략)</p>	<p>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 ----- ----- ----- <u>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u></p> <p>② <u>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536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8.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 나. 적용의 범위(안 제2조)
- 다. 정의(안 제3조)
- 라. 정기점검 대상(안 제4조)
- 마. 긴급점검 대상(안 제5조)
- 바. 소규모 노후건축물등 점검대상(안 제6조)
- 사. 안전진단 대상(안 제7조)
- 아. 해체신고 대상(안 제8조)
- 자.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안 제9조)
- 차. 건축물 해체의 허가(안 제10조)
- 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안 제11조)
- 타. 빈 건축물의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안 제1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전화 032-560-3332, 팩스 032-560-2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 나. 적용의 범위(안 제2조)
- 다. 정의(안 제3조)
- 라. 정기점검 대상(안 제4조)
- 마. 긴급점검 대상(안 제5조)
- 바. 소규모 노후건축물등 점검대상(안 제6조)
- 사. 안전진단 대상(안 제7조)
- 아. 해체신고 대상(안 제8조)
- 자.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안 제9조)
- 차. 건축물 해체의 허가(안 제10조)
- 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안 제11조)
- 타. 빈 건축물의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이라 한다) 내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 2. 「^{제1691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점검대상 건축물
- 4.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1.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1.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법 제40조제2항 및 제4항,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 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법인등으로 선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건축물관리법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2.~4. 생략

②~④ 생략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⑨ 생략

제4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자가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2. ~ 4. 생략

②·③ 생략

제9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③ 생략

제1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 6. 생략

7.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11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③ 생략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2. 생략

3.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23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31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① ~ ④ 생략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 ⑥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견제출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538호

인천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변경):계명어린이공원】 결정 입안을 위한 열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변경) : 계명어린이공원) 결정 입안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8.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원개요

- 공 원 명 : 계명어린이공원
- 공원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35-2번지
- 면 적 : 3,036.5㎡

2.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입안사유

- 시설물 노후 등으로 민원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공원 이용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공원 환경을 제공을 위해 공원시설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3.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입안 총괄조서(붙임1)

4. 관계도서 : 게재 생략

- 시설결정 조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 (☎032-560-4802)

붙임1) 총괄조서(계명어린이공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 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계	3,035.7	1,681.5	-	-	-	73	3,036.5	1,773.5	1	33.0	33.0	61	부지면적 감)0.8㎡ 시설면적 증)92.0㎡ 공작물감)12기	
공 원 시 설	시 설 계	1,681.5	1,681.5	-	-	-	73	1,773.5	1,773.5	1	33.0	33.0	61	증)92.0㎡
	기 반 시 설	소계	1,067.1	1,067.1	-	-	-	1,093.7	1,093.7	-	-	-	-	증)26.6㎡
		도로	165.4	165.4	-	-	-	254.4	254.4	-	-	-	-	증)89.0㎡
		광장	901.7	901.7	-	-	-	839.3	839.3	-	-	-	-	감)62.4㎡
		조경시설	15.4	15.4	-	-	-	56.9	56.9	-	-	-	7	증)41.5㎡ 공작물감)16기
	휴양시설	120.9	120.9	-	-	-	-	-	-	-	-	17	감)62.4㎡ 공작물감)3기	
	유희시설	433.2	433.2	-	-	-	4	470.0	470.0	-	-	-	8	증)36.8㎡ 공작물증)4기
	운동시설	25.3	25.3	-	-	-	3	100.3	100.3	-	-	-	6	증)75.0㎡ 공작물증)3기
	교양시설	19.6	19.6	-	-	-	1	19.6	19.6	-	-	-	1	
	편익시설	-	-	-	-	-	-	33.0	33.0	1	33.0	33.0	1	증)33.0㎡
관리시설	-	-	-	-	-	22	-	-	-	-	-	21	공작물감)1기	
녹지 / 기타	1,354.2	-	-	-	-	-	1,263.0	-	-	-	-	-	감)91.2㎡	
시설율(%) (법정60%이하)	· 시설율 : 55.39% · 녹지율 : 44.61%						· 시설율 : 58.40% · 녹지율 : 41.60%							
건폐율(%) (법정 5%이하)	-						· 건폐율 : 1.09%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539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과기어린이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안)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과기어린이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2. 8.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원개요

- 공원명 : 과기어린이공원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57-2
- 면 적 : 2,394.7m²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 서구청 공원녹지과 (☎032-560-4802)

3.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도서 : 게재 생략

(시설결정 조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

도시관리계획(과기어린이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57-2번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계	2,394.9	594.82	-	-	-	64	2,394.7	1,430	1	40.34	40.34	66	감)0.2㎡		
공 원 시 설	시 설 계	594.82	594.82	-	-	-	64	1,430	1,430	-	-	-	66	증)835.18㎡	
	기 반 시 설	소계	309.54	309.54	-	-	-	-	766	766	-	-	-	-	증)456.46㎡
		도로	19.6	19.6	-	-	-	-	483	483	-	-	-	-	증)463.4㎡
		광장	289.94	289.94	-	-	-	-	283	283	-	-	-	-	감)6.94㎡
	조경시설	-	-	-	-	-	4	-	-	-	-	-	-	감)4기	
	휴양시설	-	-	-	-	-	19	95	95	-	-	-	15	증)95㎡	
	유희시설	170.86	170.86	-	-	-	5	489	489	-	-	-	11	증)318.14㎡	
	운동시설	114.42	114.42	-	-	-	8	26	26	-	-	-	4	감)88.42㎡	
	교양시설	-	-	-	-	-	-	-	-	-	-	-	-	-	
	편익시설	-	-	-	-	-	-	54	54	1	40.34	40.34	-	증)54㎡	
관리시설	-	-	-	-	-	28	-	-	-	-	-	37	증)13기		
녹지 및 기타	1,800.08	-	-	-	-	-	969.7	-	-	-	-	-	녹지율: 40.49%		
시설율(%) (법정60%이하)	$(594.82\text{㎡} \div 2,394.9\text{㎡}) \times 100 = 43.2\%$						$(1,430\text{㎡} \div 2,394.7\text{㎡}) \times 100 = 59.72\%$								
건폐율(%) (법정 5%이하)	$(0.0\text{㎡} \div 2,394.9\text{㎡}) \times 100 = 0.0\%$						$(40.34\text{㎡} \div 2,394.7\text{㎡}) \times 100 = 1.68\%$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540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연희3지구 제1호공원(갈매어린이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안)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연희3지구 제1호공원(갈매어린이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2. 8.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원개요

- 공원명 : 갈매공원(연희3지구 제1호공원)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304번지
- 면 적 : 1,682㎡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 서구청 공원녹지과 (☎032-560-4804)

3.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도서 : 게재 생략

(시설결정 조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

[붙임 1]

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제1호공원[갈매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표(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304)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동 수 (동)	바 닥 면 적 (㎡)	연 면 적 (㎡)				동 수 (동)	바 닥 면 적 (㎡)	연 면 적 (㎡)				
계	1,680.00	925.92	1	8.00	8.00	266	1,682.6	925.92	1	8.00	8.00	88	증)2.6		
공 원 시 설	시 설 계	925.92	925.92	1	8.00	8.00	266	925.92	925.92	1	8.00	8.00	88		
	기 반 시 설	소 계	382.74	382.74	-	-	-	-	382.74	382.74	-	-	-	-	
		도 로	41.00	41.00	-	-	-	-	41.00	41.00	-	-	-	-	
		광 장	341.74	341.74	-	-	-	-	341.74	341.74	-	-	-	-	
	조경 시설	-	-	-	-	-	-	-	-	-	-	-	-		
	휴양 시설	-	-	-	-	-	15	-	-	-	-	-	16		
	유희 시설	231.18	231.18	-	-	-	3	231.18	231.18	-	-	-	2		
	운동 시설	304.00	304.00	-	-	-	-	304.00	304.00	-	-	-	3		
	교양 시설	-	-	-	-	-	-	-	-	-	-	-	-		
	편익 시설	-	-	-	-	-	-	-	-	-	-	-	-		
관리 시설	8.00	8.00	1	8.00	8.00	248	8.00	8.00	1	8.00	8.00	67			
녹지 및 기타	754.08	-	-	-	-	-	756.68	-	-	-	-	-	증)2.6㎡		
시설율(%) (법정 60%이하)	$(925.92\text{㎡} \div 1,680.0\text{㎡}) \times 100 = 55.11\%$						$(925.92\text{㎡} \div 1,682.6\text{㎡}) \times 100 = 55.03\%$								
건폐율(%) (법정 5%이하)	$(8.00\text{㎡} \div 1,680.0\text{㎡}) \times 100 = 0.01\%$						$(8.00\text{㎡} \div 1,682.6\text{㎡}) \times 100 = 0.01\%$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544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신청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현 금고 약정이 2022. 12. 31.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차기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8.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금고의 수 : 1개 금고(단수금고)

※ 일반회계, 특별회계(세입세출외현금 포함), 기금을 모두 관리하는 금고

2. 약정기간 : 2023. 1. 1. ~ 2026. 12. 31.(4년)

3. 지정방법 : 일반공개경쟁

4. 금고의 주요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 등 각종 잡종금의 수납 및 지급
- 일상경비 등 배정자금 및 유가증권, 수입증지의 출납 및 보관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

5. 신청자격 :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서구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6. 지정 신청 절차

(1) 서류열람

- 열람기간 : 2022. 9. 5.(월) ~ 9. 8.(목) 근무시간 중(09:00~18:00)
- 장 소 : 서구청 세무1과 (본관 1층)
- 열람서류 : 2020, 2021년도 결산서 및 2021, 2022년도 예산서
※ 금고 지정 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으며, 금고 지정신청 안내서로 같음

(2) 신청서(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9. 15.(목) ~ 9. 16.(금) 근무시간 중(09:00~18:00)
※ 신청서 접수기한이 지난 뒤에는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를 접수하지 않음
- 접수장소 : 서구청 세무1과 (본관 1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제출부수 : 제안서 및 증빙서류 각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 제출서류 : 금고지정 신청서 1부, 제안서 및 각종 증빙서류 11부, 각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확인서 1부, 기타 요청서류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배 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6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
3. 주민이용의 편의성	21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4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7
6. 기타사항	2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1], [별표2] 참조

8. 심의·평가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세부 배점 기준을 확정하여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함.
-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프레젠테이션 또는 면접심의(질의·응답)을 실시할 수 있음. 제안서 제출 금융기관에서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심의·평가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 금융기관 제출자료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심의·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름.

9.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등

-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최고점수를 득한 금융기관을 우선 지정대상 은행으로 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은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함.
- 우선 지정대상 은행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 금융기관과 약정체결을 진행함.
-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해당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우리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 지정 심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 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 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음.

- 금고로 지정되어 금고업무 상호 인계·인수 시 기존 금고에 예치한 정기 예금에 대하여는 만기 도래한 후 인계·인수함.
- 새로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인천광역시 1금고 은행과 협조하여 수납세입금 집계 및 정산 지연, 구민의 세입금 납부불편 초래 등 관련 세입사무 처리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
- 금고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23. 1. 1.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2023. 1. 1.부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금고 약정에 따라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음.

10. 비용부담

- 금고 지정 신청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및 선정된 후 약정 체결, 금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 등은 금융기관 부담으로 함.

11. 기타사항

- 제안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되, 심의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 색인표 부착을 요망.
-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계획과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무효처리 될 수 있음.
- 제안서 접수시 은행별 제안서 11부를 확인한 후 밀봉할 예정이므로,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이 날인된 사용인감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 접수된 제안서(증빙서류 포함)는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 및 서구청 세무1과 관계공무원이 확인하여 봉합 날인 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장소에서 개봉함.
-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문의 : 세무1과 세무행정팀 (☎ 032-560-4191~2)